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6월 30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61호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1(항공운임 및 마일리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1(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①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운임은 발매자에게 직접 지급 또는 기관카드로 결제하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출장자는 귀국 후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20일 이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및 별지5호의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마일리지 적립불가 항공사 이용 또는 타기관 예산을 활용한 경우에는 ‘0’으로 등록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보고한 임직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한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공무를 통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내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